

의안번호	2211323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5. 10. 14.
추계번호	25B3726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6조의4(도로안전도 평가) 신설	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도로안전도 평가(도로의 구조·환경 등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라 도로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관 도로를 개선·보수하거나, 유지·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56조의5(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) 신설	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도로안전도 평가의 전문적인 기술지원, 평가결과의 검토 및 도로안전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·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4.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연구·개발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6조의4(도로안전도 평가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6조의5(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도로안전도 평가 및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의 지정(안 제56조의4, 안 제56조의5)

-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도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안전도 평가의 전문적인 기술지원, 평가결과의 검토 및 평가 관련 연구·개발을 위하여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이 때 센터의 연구·개발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현재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로 위 주요 시설물별로 [참고자료 1]과 같이 이뤄지고 있음
 - 또한 도로는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¹⁾에 해당하며, 관리주체는 소관 도로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고 도로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
-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기적인 도로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개발, 안전도평가방법 및 실시 주기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('23. 4. ~ '26. 12.)으로,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도평가 실시를 위탁하게 될 평가지원센터 필요 인력과 사업비 등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기반시설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"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가.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도로 주요 관리대상 시설물 및 도로시설 안전등급 현황

□ 도로 주요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

[참고표 1] 도로 주요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

구분	중점관리시설	종 구분	시설물현황		비고
도로	교량	1종	3,253개소	15.9%	•연장길이 2,499,692m •고속국도 9,573개소 •일반국도 9,136개소 •민자도로 1,700개소
		2종	4,464개소	21.9%	
		3종	6,299개소	30.9%	
		기타	6,393개소	31.3%	
		전체	20,409개소	100%	
	터널	1종	712개소	32.3%	•연장길이 1,923,745m •고속국도 1,086개소 •일반국도 856개소 •민자도로 265개소
		2종	1,495개소	67.7%	
		기타	—	—	
		전체	2,207개소	100%	
	지하차도	1종	12개소	7.1%	•연장길이 43,512m •고속국도 10개소 •일반국도 131개소 •민자도로 27개소
		2종	103개소	61.3%	
		3종	21개소	12.5%	
		기타	32개소	19.0%	
		전체	168개소	100%	
	보도육교	전체	220개소	100%	•연장길이 6,921m •고속국도 1개소 •일반국도 217개소 •민자도로 2개소
	옹벽	전체	17,903개소	100%	•일반국도 15,360개소 •재정고속도로 2,150개소 •민자도로 393개소
	비탈면	2종	4,060개소	9.2%	•일반국도 30,543개소 •재정고속도로 10,847개소 •민자고속도로 2,907개소
		기타	40,237개소	90.8%	
		해당없음	—	—	
		전체	44,297개소	100.0%	

주 1) 교량, 터널, 지하차도, 보도육교: 2025년도 전국 도로 교량·터널 현황조사 및 현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

2) 옹벽, 비탈면: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(FMS) 자료 활용(2025년 6월 기준)

3) 민자고속도로: 각 관리주체 제공 자료 활용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도로시설 안전등급 현황

- 안전등급 평가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점검진단 결과 준용
- 교량 95.5%, 터널 96.9%가 안전등급 B등급 이상 유지.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“보통”을 기 달성

[표 2] 도로시설 안전등급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분	전체	안전등급				
		A	B	C	D이하	등급미부여
교량	20,409	5,795	13,704	703	3	204
		(28.4%)	(67.1%)	(3.4%)	(0.0%)	(1.0%)
터널	2,207	1,300	839	2	—	66
		(58.9%)	(38.0%)	(0.1%)	—	(3.0%)
지하차도	168	99	55	1	—	13
		(58.9%)	(32.7%)	(0.6%)	—	(7.7%)
비탈면 (국도)	30,543	2,147	9,247	17,018	2,131	—
		(7.0%)	(30.3%)	(55.7%)	(7.0%)	—
비탈면 (재정고속)	10,847	14	1,309	580	—	8,944
		(0.1%)	(12.1%)	(5.3%)	—	(82.5%)
비탈면 (민자고속)	2,907	55	249	106	—	2,497
		(1.9%)	(8.6%)	(3.6%)	—	(85.9%)

주 1) 교량, 터널, 지하차도, 보도육교: 2025년도 전국 도로 교량·터널 현황조사 및 현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
 2) 비탈면: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(FMS) 자료 활용(2025년 6월 기준)
 3) 민자고속도로: 각 관리주체 제공 자료 활용
 4) 보도육교, 옹벽: 안전등급 정보가 관리되지 않아 현황분석에서 제외
 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